

發明·考案의 企業化促進方案

<上>

黃 二 南

<修習辨理士>

- ◇……다음은 1980年度 第16回 辨理士資格試驗合格者로서 修習過……◇
- ◇…程中 特許廳에 提出하게 되어 있는 같은 題下의 論文 11篇 가……◇
- ◇…운데 하나를 뽑아 2회에 나누어 掲載한다. (編輯者 註) ……◇

— 目 次 —

1. 發明考案의 企業化重要性
 - (1) 發明考案의 企業化定義
 - (2) 發明考案과 經濟發展
 - (3) 發明考案의 企業化必要性
2. 發明考案의 企業化實態
 - (1) 登錄된 發明考案의 國內活用
 - (2) 技術導入과 發明考案의 實施
 - (3) 發明考案의 企業化 問題點
3. 發明考案의 企業化를 위한 促進方案
 - (1) 研究開發投資환경의 造成
 - (2) 政策方向의 設定
 - (3) 關聯法의 補充
 - (4) 發明考案의 獎勵資金確保
 - (5) 新技術企業化事業에 대한 支援強化

I. 發明考案의 企業化重要性

1. 發明考案의 企業化定義

發明은 自然法則을 利用한 技術의 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한 것으로 新規의 技術을 開發하였거나 從來의 技術을 改良하여 현재한 作用效果가 있는 技術등을 말하는 反面, 考案은 發明의 경지에는 達하지 않았으나 뚜렷한 改善效果가 있고 實用上 便利한 技術을 開發한 것을 그 對象으로 하고 있어 兩者는 水準에 있어서 약간의 差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根本的인 것은 모두 技術을 開發한 成果로서 産業上 利用可能性이 있어야 한다는 點에서는 差異가 없다고 하겠다.

發明考案은 産業에 應用되므로써 技術의 進歩發展에

기여하게 되고 發明者는 獨占的인 使用으로 經濟的인 富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

特許制度가 이러한 趣旨下에 탄생한 것이며 더불어 經濟發展에 크게 寄與했다고 볼 수 있다.

發明考案의 企業化란 새로운 技術의 事業化를 意味하는 것으로 技術開發促進法 第2條에 明示된바에 의하면 “國內에서 最初로 이루어진 技術開發의 成果를 처음으로 企業化한 事業”을 말한다. 또한 同條에 “國產新技術製品”이라 함은 新技術이나 導入技術의 消化改良에 의하여 國內에서 完成된 製造工程 및 그 工程에 의하여 生産된 製品으로서 技術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科學技術處長官이 認定하는 것을 말한다.

新技術企業化의 認定範圍는 特許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이 技術을 開發한 成果를 처음으로 企業化한 것으로서 科學技術處長官이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認定한 것을 말하므로 發明은 同法의 範圍에 포함되지만 考案은 該當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發明考案의 企業化란 發明品·製造方法·既存製品의 消化改良·改善等에서 얻은 技術의 思想을 實際事業化함으로써 經濟的인 利潤을 追求할 수 있도록 實行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發明考案과 經濟發展

經濟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수없이 많다. 勞動·資本·技術 및 政治·社會·文化等이 고르게 기여를 해야 經濟發展을 기대할 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要因은 勞動·資本·資源의 生産要素를 結合하는 能力인 技術이 介在되어야 生産物이 만들어져 生産의 擴大가 可能한뿐 아니라 單位當 生産量을 늘려 經濟性을 確保하여야만 經濟發展의 原動力이 되는 것이다.

近代産業社會의 形成과 發達에 中樞의 役割을 擔當해 온것은 技術의 進步發展으로서 18世紀中葉 제임스·와트의 증기기관의 發明을 기록제로 英國에서 始作되어 19世紀 초엽에 美國·프랑스 및 독일로 전파된 産業革命은 動力과 새로운 機械의 發明에 의한 生産道具의 變化로 生産樣式 및 生産關係에 變革을 일으켜 資本主義産業社會를 形成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自由競爭市場을 前提로 하는 利潤追求를 目標로 새로운 商品, 새로운 生産技術과 製造工程 및 새로운 市場을 開發하기 위한 努力과 投資活動이 끊임없이 進行되어 왔으며 企業間의 有力한 경쟁수단이 되는 우수한 新製品이나 新技術을 획득하기 위한 究研開發의 成果로 많은 發明과 考案이 續出하여 實用化하기 위한 技術革新이 繼續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기술개발은 19世紀까지는 大部分이 個人發明家나 現場技術者에 의하여 獨立의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世紀에 들어와서 科學技術者들이 參考하여 基礎科學을 土嚮로 한 기술개발의 형태는 다시 技術의 綜合化에 의한 開發形態로 發展되어 各分野의 科學技術者들이 參考하여 技術開發의 規模가 擴大되어 新技術의 開發方法은 巨大化·綜合化·組織化되어 그 開發속도도 加速化되어가고 있다.

開發速度가 빨라짐에 따라 製品의 life-cycle이 점차 짧아져가고 있으므로 企業間·國家間의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 내지는 치열해져가고 있다. 發明考案이 경제발전 前에 기여하는 형태는 開發된 成果의 權利化를 보호해주는 獨占의 實施에 있고 아울러 技術의 公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先進諸國은 200餘年 전부터 特許制度를 導入하여 個人이나 企業이 發明의욕을 고취시켜주는 물론 發明者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 産業化에 촉진제의 役割을 하여 오늘날의 經濟的인 富를 축적했다고 하겠다.

3. 發明考案의 企業化必要性

우수한 技術開發의 成果는 大部分 權利化되어 獨占의 으로 保護받기를 願한다. 막대한 돈을 들여 開發한 技術을 實用化하지 않는다면 技術의 進步發展 및 經濟發展은 期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技術은 生産品을 만들어내는 具體的인 手段이므로 從來에 알려진 技術만을 繼續 사용케 된다면 새로운 生産方法에 의한 좋은 製品, 값싼 製品은 供給될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問題가 야기된다. 물론 좋은 技術을 開發한 發明考案이 모두 實用化되기는 어렵겠으나 實際로는 企業化가 가능한 것도 實用化되지 않고 있는 事例가 많으므로 眞 摯한 支援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크게 지적되는 요인은 資

本부족·需要부족 및 技術水準 落後 등이 있다.

實際 産業化될 수 있는 商品이 사장된다면 國家經濟 및 技術의 進步에도 損害를 끼치게 되므로 새로운 技術은 반드시 公開되고 産業現場에 適用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 즉, 애써 얻은 成果가 活用되지 못한다면 發明考案에 投資한 者는 물론 關聯産業에 있어서도 發明의 계기를 상실하고마는 兩面的인 損失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發明考案을 企業化하는데 必要한 制度的 支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II. 發明考案의 企業化實態

1. 登錄된 發明考案의 國內活用

特許廳이 調査한 工業所有權活用實態調査에 의하면 1977. 8. 30 現在 登錄된 特許權과 實用新案權은 다음과 같다.

가) 權利의 活用與否 調査

權利別	對象權利	實施하고 있다	實施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
特許權	1,353	358 (26.5%)	171 (12.6%)	8 (0.6%)
實用新案權	6,512	1,322 (21.3%)	643 (9.9%)	17 (0.3%)
計	7,865	1,680 (21.4%)	814 (10.4%)	25 (0.3%)

上記調査에 의하면 總調査對象權利中 21.4%만이 實施하고 있다고 應答하였으나 이는 現場調査가 아니고 書信에 의한 設問調査이므로 신빙성이 희박한 資料로 밖에 볼 수 없으나 先進外國에 比하면 活用率이 낮은 편은 아니다. 工業所有權이 實施의 目的과 방어의 目的을 겸하고 있으므로 自國內에서 實施하는데 문제 크지 않으나 外國에서 實施할때는 많은 制約이 뒤따르게 된다.

나. 活用形態

權利別	對象權利	直接實施	他人實施
特許權	1,653	300건 (22%)	58건 (4.3%)
實用新案權	6,512	1,237건 (19%)	85건 (1.3%)
計	7,865	1,537건 (19.5%)	143건 (1.8%)

총대상권리중 21.3%가 實施되고 있으며 그 중 19.5%만이 직접 실시되고 있고 1.8%는 他人이 實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을 시킴으로써 關聯部署의 모든 社員이 參考토록 하며 네째, 디자인室과 設計室의 도움을 얻어 商標와 意匠開發에도 徹底한 점」등을 들었다

全體의 特性으로는 「첫째, 工場 研究所, 特許部署가 한 울타리안에 있기 때문에 分散, 混合方式이 아닌 綜合的 中央集中的管理可能 둘째, 三星電子部品, 三星코우닝, 三星電管 등 電子그룹系列社가 同一團地內에 있기 때문에 相互迅速한 業務協力을 통해 電子그룹社의 特許管理遂行 셋째, 工業所有權의 事後管理라는 消極的 側面에서 脫皮하여 技術情報資料의 積極活用으로 研究開發部에 대한 開發方向提示, 開發期間의 短縮 등 積極的 特許管理에로의 轉換 넷째, 우리나라 特許部署에서 通常 擔當하고 있지 않은 技術導入 및 技術契約締結에 관한 業務擔當 다섯째, 海外各種情報資料의 入手 窓口를 一元化하여 技術情報의 綜合的 蒐集, 活用」등이 라고 말했다.

資料室에는 美國, 日本 등의 海外

技術情報機關과 KORSTIC, 海外支社를 통해 들어온 수많은 資料, 刊行物, 特許文獻등이 整理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海外出張者들의 研修報告書資料까지 所藏하고 있다.

張課長은 그동안 重要한 業務成果로서 職務發明補償制度의 完備와 마그네터의 開發을 들었다.

同社는 社員의 發明意慾을 鼓吹 시킴으로써 人的資源을 最大限 技術開發에 活用코자 1979年 3月 17日에 職務發明補償制度를 制定, 施行하였으나 未備點이 많아 同制度를 再檢討하고 國內는 물론 日本, 美國 등에서 資料를 入手, 參考하여 1981年 6月 1日 改正, 施行하였다. 改正骨子は 補償金을 大幅引上하고 技術本部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審査委員會와 事業部別로 所管專門委員를 構成하고 있는 것이다.

同社에서 職務發明補償制度實施以後 出願實績이 200%나 伸張된 것을 보면 그 效果는 가히 짐작된다.

칼러 TV에 使用되는 마그네터를

自體技術에 의해 獨自的으로 開發하여 國內와 美國, 日本 등에 出願中이며 캐나다에서 열렸던 마이크 로웨이브學術大會(IMPI)에서 製品 및 技術內容을 發表하여 喝采를 받았다. 同社가 開發한 마그네터는 從來의 마그네터크기의 折半도 되지 않으며 性能이 좋기 때문에 輸出 費品에 附着을 하면 부피縮小, 輸送 節減, 原價節減 등 많은 效果를 거두어 輸出增進에 크게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金部長은 特許管理와 關聯하여 「첫째, 擔當要員이 積極的으로 工業所有權管理의 重要性을 經營層에 認識시킴으로써 企業은 물론 國家經濟面에서도 得을 가져오도록 하고 둘째, 先進技術은 果敢히 導入, 改良消化하며 셋째, 國內 企業間만이라도 Cross license契約를 推進, 相互協力을 模索하는 한편 넷째로 前進的 積極的 特許管理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編輯室>

修習辨理士研修論文

—43面에서 계속—

여기서 實施라는 것은 産業現場에 그 技術의 一部가 使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實施의 形態로 보아 企業이 所有하고 있는 權利가 많으므로 直接 實施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他人에 의한 實施가 적은 理由中의 하나가 代價를 支拂하고 實施할만한 技術이 되지 못하고 水準이 낮은 低級의 技術이기 때문에 他人에 의한 實施率이다) 直接 實施하는 경우 隘路事項

權利別	對象	資金調達	技術不足	市場開拓	예외없다
特許權	300	106 (35.3%)	36 (12.0%)	81 (27%)	77 (25.7%)
實用新案權	1,237	391 (31.8%)	182 (14.7%)	357 (28.9%)	307 (24.8%)
計	1,537	497 (32.3%)	218 (14.2%)	438 (28.5%)	484 (25%)

낮은 것으로 判斷하여 볼 수도 있다.

總 1,537件의 權利中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은 資金 調達 32.3%, 市場開拓 28.5%, 技術不足 14.2%의 順으로서 發明考案을 企業化로 移行하는데 있어 첫째 사항은 資金이라는 것이 明確히 나타나고 있다. 事業化以後에 問題되는 것이 市場開拓으로서 商品의 販賣가 다음으로 問題가 된다. 이는 市場需要가 협소한데도 原因이 있겠으나 技術水準이 낮아서 他商品과 競爭이 안되는 경우가 許多하다. 특히 外國의 商品과 경쟁하는 경우에는 더욱 技術水準이 問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과 같이 國內에 登錄된 發明考案의 企業化를 檢討하여 보였으나 이것은 主觀的인 調查統計를 引用한 例로서 우리나라 工業所有權 全體를 놓고 評價하여 볼 수는 없다. 특히 外國의 工業所有權과 比較가 直接 되지 않아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계속>